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1. 11 선고 2021가단56214(본소), 2022가단58576(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유류분반환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담당변호사 김승휘, 민경훈)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담당변호사 임호범)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나양명

변론 종결2022. 12. 21.

판결 선고2023. 1. 1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1,765,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1.부터 2022. 12.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1/2은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구취지

본 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 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115,677,575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배우자 D과 사이에 자녀로 피고 1명을 두었는데, C과 D은 2000년경 이혼하였고 이후 D은 피고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서 피고를 홀로 양육하였으며, 피고는 성분을 모친을 따라 변경하는 한편 이름도 현재와 같이 개명하였다.

나. C은 2021. 5. 1. 사망하였는데, 사망 직전에 "유언장. 유언인 C은 간암으로 투병 중 회복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유언인 C의 모든 재산을 친동생 A(원고)에게 상속한다. 이 유언의 모든 집행사항을 A으로 실행한다. 2021년 5월 1.일. 유언인 C."이라는 취지로 구술하였고, C의 중학교 동창인 E가 뒤를 이어 "이 유언은 유언인의 명확한 유언임을 증언합니다. 증인 E. 2021년 5월 1.일."이라고 구술하였다.

다. 원고는 위 구술이 녹음된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검인을 신청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21느단50162), 2021. 7. 15. 피고의 참석 아래 법원에 의한 유언검인이 이루어졌다.

라. 이후 피고는 자신을 C의 단독 법정 상속인이라고 밝히며, ① 2021. 7. 21. F 주식회사로부터 연금 일시금으로 25,994,844원, ② 2021. 7. 26. G 주식회사로부터 연금 일시금으로 17,201,673원, ③ 2021. 7. 28. H 주식회사로부터 암 보험금으로 41,655,893원(암 진단 급여금 30,000,000원 포함)을 각 지급받았다(합계 84,852,410원).

마. C은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 2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11. 자신 앞으로 '2021. 5.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바. C은 사망 당시 합계 32,685,030원 [= 13,767,450원(I은행(계좌번호 1 생략)) + 3,209,522원(1은행 (계좌번호 2 생략)) + 15,708,058원(J조합 (계좌번호 3 생략))]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2021. 5. 1.부터 다음 날(2021. 5. 2.)까지 위 각 예금계좌에서 합계 32,676,972원을 인출한 후, 그중 2,416,900원을 C의 진료비용으로, 6,876,100원을 C의 장례비용으로, 550,000원을 C의 추모공원 안치비용으로 각 지출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1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K조합, 채무자 C, 채권최고액 9,12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이 사건 2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K조합,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C 사망 당시(2021. 5. 1.) 이 사건 1부동산 관련 담보대출의 원리금은 67,791,013원, 이 사건 2부동산 관련 담보대출의 원리금은 162,530,808원이었다.

아. K조합은 2022. 3. 11. 피고에게 'C으로부터 상속받은 대출금의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1, 2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행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이후 이 사건 1, 2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청주지방법원 L),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 결과 2022. 6. 28. 기준 이 사건 1부동산의 가액은 1억 8,700만 원, 이 사건 2부동산의 가액은 2억 6,200만 원으로 각 평가되었다. 또한, 위 경매절차에서 ① 이 사건 2부동산 M호의 임차인 N가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② C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한 미납 자동차세·재산세 460,080원, 미납 재산세 합계 2,774,460원(= 507,920원 + 1,367,830원 + 898,710원)에 대하여 각 교부청구가 있었다.

자. 피고는 이 사건 2부동산과 관련하여 C에게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120,970원을 2022. 2. 7.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을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주식회사·G 주식회사·H 주식회사에 대한 각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이 사망 당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함으로써 원고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1, 2부동산 및 C의 사망으로 발생한 연금 일시금 내지 보험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권을 승계취득하였다. 또한, C이 체결한 보험계약 등에서 보험금등의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상속재산 전부의 포괄적 수증자로서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등 청구권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자신이 단독 법정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등까지 수령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는바, 상속재산의 가액 중 피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 1) 이 사건 1, 2부동산 및 C 사망 당시의 예금채권은 상속재산으로서 그중 1/2은 단독 법정 상속인이자 유류분권자인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 2) 보험금등 청구권은 법정 상속인인 피고가 보험수익자로서 취득한 고유재산이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권리도 인정될 수 없다. 다만, H 관련 암 진단 급여금 3,000만 원은 상속재산이라고 할 것이나 그중 1/2은 역시 유류분권자인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 1) 원고는 C로부터 상속재산 전부를 포괄 유증받은 포괄적 수증자인바, 이러한 경우 원고는 C의 사망과 동시에 C의 재산을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피고는 C의 직계비속이라 하더라도 유류분을 제외하고는 상속한 상속재산이 없다(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078 판결 참조). 그런데도 피고는 자신을 법정 상속인이라 주장하며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러한 경우 포괄적 수증자인 원고는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포괄적 유증에 의한 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2)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등 합계 84,852,410원에 대해서도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H와

관련된 암 진단 급여금 3,000만 원은 C 생전에 암 진단을 받았을 당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 청구권 역시 C에게 이미 귀속되었으므로, 위 3,000만 원은 상속재산으로서 반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나머지 보험금등 54,852,410원의 경우, C이 체결한 보험계약 등에 따르면 C이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인 '법정 상속인'에게 연금 일시금 및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법정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법정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등 참조), C이 생전에 연금을 받아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 이후에 지급되는 연금 일시금 및 보험금까지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그러나 보험수익자를 '법정 상속인'과 같이 추상적 또는 유동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를 특정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55817 판결 등 참조), C이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법정 상속인'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하는 1순위 법정 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분을 가지고 있던 상속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 C이 2000년경 배우자와 이혼한 뒤 그들의 아들인 피고는 모친에 의해 홀로 양육되었을 뿐 C과는 20년 이상 관계가 두절되었다고 보이는 점, ► C은 사망 직전에 유언을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친동생인 원고에게 포괄 유증함으로써 상속 관계를 정리할 의사를 명백히 밝힌 점, ► 포괄 유증을 통하여 C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은 전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피고는 C의 사망 당시 C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인으로서의 상속분을 상실하게 된 점(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078 판결 참조), ►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고(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하므로(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참조), C은 포괄 유증을 통하여 보험수익자를 포괄적 수증자인 원고로 변경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암 진단 급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등의 보험수익자인 '법정 상속인'은 포괄적 수증자인 원고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피고는 자신이 보험수익자인 '법정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등을 수령하였는바, 보험수익자인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등 중 암 진단 급여금을 제외한 54,852,410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4) 다만, 원고는 상속재산 자체의 회복을 구하는 대신 C의 상속재산 가액 중 피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자신이 취득한 상속재산의 가액 중 피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제외한 금액 및 ②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보험금등 54,852,41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하여

1)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바(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구체적 상속분) - 상속채무 부담액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위 산정 방법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가) C의 적극적 상속재산 : 합계 511,685,030원

- 이 사건 1, 2부동산 : 합계 449,000,000원
- 예금채권 : 합계 32,685,030원
- H 암 진단 급여금 : 30,000,000원

※ 원고는 H 암 진단 급여금 이외에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등 역시 상속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C의 증여재산 : 0원

※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등이 특별수익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C의 상속채무 : 합계 256,094,231원

- 이 사건 1, 2부동산 관련 담보대출 원리금 : 합계 230,321,821원(= 67,791,013원 + 162,530,808원)

- 이 사건 2부동산 관련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 20,000,000원

- 진료비 및 입원 비용 : 2,416,900원(원고는 C의 장례비용, 추모공원 안치비용도 상속채무로 주장하나, 이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

- 체납액 : 합계 3,355,510원(= 460,080원 + 2,774,460원 + 120,970원. 피고는 이를 원고의 채무로서 유류분 산정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

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255,590,799원

마) 유류분 비율(B) : 피고의 법정 상속분(1) × 직계비속 유류분 1/2 = 1/2

바) 유류분액(A × B): 127,795,399원(원 이하 버림)

사) 특별수익액(C): 0원(피고가 수령한 보험금등은 상속재산이거나 원고의 고유재산으로서 특별수익이라 볼 수 없다)

아) 순상속분액(D): 0원(상속재산 전부가 원고에게 포괄 유증됨)

자) 유류분 부족액 : 127,795,399원

3) 다만, 피고는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유류분 부족액을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보다 적은 115,677,575원으로 주장하였으므로, 피고의 최종적인 유류분 부족액은 115,677,575원이라 할 것이다.

4) 한편 유류분 반환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1, 2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H 암 진단 급여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유류분 부족액을 넘는 재산을 이미 취득한 상태이고, 원고가 상속재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대신 그 가액 중 피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상속재산 가액(별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인 255,590,799원이 상속재산 가액이라 할 것이다)에서 피고의 유류분 부족액 115,677,575원을 제외한 나머지 139,913,224원 및 ② 원고가 보험수익자로서 직접 취득한 보험금등 가액 54,852,410원의 합계액 194,765,634원 중 원고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구하는 141,765,29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상속재산 취득일 및 부당이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8. 11.부터 '2022. 12.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2022.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하상익

별지